

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안내

① 교육 개요

- (근거)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
- (교육대상)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▶ [참고2]
- (교육내용)
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
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
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
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
 - * (근거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36조의6 제1항
- (교육기간) '23.1.1. ~ '23.12.31.
- (교육방법)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
 - (교육콘텐츠)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** 등*** 활용
 - *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(www.gseek.kr)→‘장애인학대’ 검색→온라인 학습 ‘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’
 - **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(www.naapd.or.kr)→ 자료→신고의무자 교육
 - *** 참고3(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탑재사이트) 참고

② 교육 결과제출

- (근거)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
- (내용)
①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, ②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
 - * 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포함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됨(별도 재교육 필요 없음)

- (제출기한) '24.2.(예정)까지 교육실적 취합 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
- ※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실적 취합시기는 자율적으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
- (방법) 이수증 제출 혹은 명부 및 사진 제출(제출받은 자료는 각 시·군·구, 시도 교육지원청, 시도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보관)
 - (이수증) 원격연수시스템에서 교육 이수 시 출력 가능
 - * [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](#)에서 [이수증 출력 불가](#)
 - (명부 및 사진) PPT·PDF·영상자료를 학습받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부, 교육 참석자 이름 및 서명(혹은 날인) 포함 명부 1부
- ※ 교육자료 단순배포는 교육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
- (전달체계)
 - 신고의무자 소속기관(교육실시기관 엑셀 작성) → 시·군·구(담당부서) → 시·도(담당부서) → 관계 중앙행정기관(담당부서)(관계중앙행정기관 엑셀 작성) →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
 - 교육기관(교육실시기관 엑셀 작성) → 사도 교육지원청 → 사도 교육청 →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(관계중앙행정기관 엑셀 작성) →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
 - 119구급대(교육실시기관 엑셀 작성) → 시·도 소방본부 → 소방청(119 구급과)(관계중앙행정기관 엑셀 작성) →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
- ※ 제출경로 및 제출·취합부서 등은 지자체 설정 등에 맞게 조정 가능

참고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

□ 기본개요

- (목적)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
 - *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(예시 : 사회복지시설, 장애인활동지원기관, 의료기관 등)의 장과 종사자 등
- (근거)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
- (내용)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

□ 신고 불이행 시 제재

- (과태료)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(근거)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3의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[별표 5]

□ 신고자 보호 조치

- (내용) 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」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 하여 신고자 보호(법 제59조의6)

참고 2 신고의무자별 관계기관 [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]

근거	신고의 무자		관계 중앙행정기관
	신고의무자직군	신고의무자 소속기관·시설	
1호	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	시도, 시군구, 읍면동 등	보건복지부 (지역복지과)
	노인복지시설 * 노인복지법	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보호전문기관,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	보건복지부 (노인정책과)
		노인의료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	보건복지부 (요양보건운영과)
		노인여가복지시설, 노인일자리지원기관	보건복지부 (노인지원과)
	복합노인복지시설	보건복지부 (복지정책과)	
	아동복지시설 * 아동복지법	아동양육시설, 아동 일시보호시설, 아동 보호치료시설, 자립 지원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	보건복지부 (아동권리과)
	지역아동센터	보건복지부 (인구정책총괄과)	
	아동보호전문기관, 공동생활가정(학대 피해아동쉼터)	보건복지부 (아동학대대응과)	
	다함께돌봄센터 * 아동복지법	보건복지부 (인구정책총괄과)	
	장애인복지시설 * 장애인복지법 제58조	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쉼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,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	보건복지부 (장애인정책과) 보건복지부 (장애인자립기반과) 보건복지부 (장애인건강과)
	노숙인시설 * 노숙인복지법	보건복지부 (자활정책과) (구 자립지원과)	
	지역자활센터 * 국민기초생활보장법	보건복지부 (자활정책과) (구 자립지원과)	
	사회복지관 * 사회복지사업법	보건복지부	

근 거	신고의무자		관계 중앙행정기관
	신고의무자직군	신고의무자 소속기관·시설	
			(지역복지과)
		결핵·한센시설 * 사회복지사업법	보건복지부 (질병정책과)
2호	제32조4에 따라 서비스 지원종합조사를 하는 자 (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)	보건복지부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, 군, 구	보건복지부 (장애인권익지원과)
2호	장애인활동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	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	보건복지부 (장애인서비스과)
2호	장애인활동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	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	보건복지부 (장애인서비스과)
3호	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(의사)	의료인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	보건복지부 (의료인력정책과)
3호	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(간호사, 조산사)	의료인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	보건복지부 (간호정책과)
3호	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(치과의사)	의료인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	보건복지부 (구강정책과)
3호	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(한의사)	의료인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	보건복지부 (한의약정책과)
3호	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	의원급 의료기관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), 조산원, 병원급의료기관(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정신 병원, 종합병원)	보건복지부 (의료기관정책과)
4호	의료기사법 제1조의2의 의료기사	의료기사가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	보건복지부 (의료자원정책과)
5호	응급의료법 제36조의 응급구조사	응급구조사가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	보건복지부 (응급의료과)
6호	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	119구급대원의 대원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	소방청 (119구급과)
7호	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	정신건강복지센터	보건복지부 (정신건강관리과)
7호	정신건강복지법	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	보건복지부

근 거	신고의무자		관계 중앙행정기관
	신고의무자직군	신고의무자 소속기관·시설	
	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,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	정신재활시설	(정신건강정책과)
8호	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	어린이집	보건복지부 (보육기반과)
9호	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	유치원	교육부 (유아교육정책과)
9호	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	유치원	교육부 (유아교육정책과)
10호	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	초등학교,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,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	교육부 (특수교육정책과)
11호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·강사·직원	학원	교육부 (평생학습지원과)
11호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·직원	교습소	
12호	성폭력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	성폭력피해상담소	여성가족부 (성폭력방지과) (구 권익지원과)
12호	성폭력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	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(일반보호시설, 장애인보호시설, 특별지원 보호시설, 외국인보호시설 등)	여성가족부 (성폭력방지과) (구 권리지원과)
12호	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	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	여성가족부 (성폭력방지과) (구 권리지원과)
13호	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	일반지원시설, 청소년지원시설, 외국인 지원시설 등	여성가족부 (폭력예방교육과) (구 권리기반과)
13호	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	성매매피해상담소	여성가족부 (폭력예방교육과) (구 권리기반과)
14호	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	가정폭력 관련 상담소	여성가족부

근 거	신고의무자		관계 중앙행정기관
	신고의무자직군	신고의무자 소속기관·시설	
	기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		(폭력예방교육과) (구 권익기반과)
14호	기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에 따른 기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	기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(단기보호시설, 장기보호시설, 외국인보호시설 등)	여성가족부 (폭력예방교육과) (구 권익기반과)
15호	건강기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기장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	건강가정지원센터	여성가족부 (가족정책과)
16호	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	다문화가족지원센터	여성가족부 (다문화가족과)
17호	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그 종사자	아동권리보장원	보건복지부 (아동복지정책과)
17호	「아동복지법」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	가정위탁지원센터	보건복지부 (아동권리과)
18호	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	한부모가족복지시설(모자가족복지시설, 부자기족복지시설, 미혼모자기족복지시설 등)	여성가족부 (가족지원과)
19호	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	청소년복지시설(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)	여성가족부 (청소년자립지원과)
		청소년활동시설(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의집 등)	여성가족부 (청소년활동안전과)
19호	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	청소년단체(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기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등)	여성가족부 (청소년정책과)
20호	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	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	여성가족부 (청소년보호환경과)
21호	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	장기요양요원이 종사하는 기관	보건복지부 (요양보험운영과)
21호	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	국민건강보험공단(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)	보건복지부 (요양보험운영과)
22호	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	장애인평생교육시설	교육부(평생학습 지원과, 특수교육정책과)

* 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기관 내 교육대상자 교육실적을 모두 취합하되, 보수교육과정 이러닝 센터(한의협 등)에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한 인원의 교육실적은 취합하지 아니함

참고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탐재처

교육자료 종류	탐재처 및 주소	수료증 출력
동영상	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(www.naapd.or.kr)	X
	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(www.naapd.or.kr)	X
	유튜브 채널(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)	X
	나라배움터(e-learning.nhi.go.kr)	O
	중앙교육연수원 및 각 시·도 교육연수원 (www.neti.go.kr)	O
	경기평생학습포털(www.gseek.kr)	O
	서울시평생학습포털(sll.seoul.go.kr)	O
	인천e배움캠퍼스(incheon.hunet.co.kr)	O
	대전평생교육진흥원(www.dile.or.kr)	O
	세종e배움터(edu.sjhle.or.kr)	O
	사회복지온라인교육연수원 (www.welfarekorea.com)	O

* 경기평생학습포털, 서울시평생학습포털, 인천e배움캠퍼스, 대전평생교육진흥원,

세종e배움터는 탐재처 소관 지자체 소재 주민이 아니어도 가입 가능

** 중앙 및 각 시도 교육연수원 웹사이트는 교사 등 교직원에 한해 접속 가능

*** 위 사이트 외에도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교육콘텐츠 공동활용 승인을 받아

영상자료를 탐재한 사설 웹사이트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실적 인정 가능

참고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참석자 명단

* 기관 자체 참석자 명단 양식으로 사용 가능